

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연구비 지급규정

제1조 (목적)

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기초와 임상 연구를 위하여 회원의 의욕을 고취하며, 이 분야의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

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연구비라 한다.

제3조 (신청자격)

- 1)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(이하 본 회라 칭함)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.
- 2) 학술연구비 신청 시 필요 자격으로 3년 이내 본 학회 학회지 “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” 에 원저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.
(2015년 학술연구비 신청부터 적용한다)
- 3) 학술연구비로 선정된 연구자는 해당 연구가 종료되어 본 학회 학회지 “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” 에 게재된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.

제4조 (연구비지급 신청서류)

신청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 1) 신청서 1부(소정양식)
- 2) 추천서(소정양식) 1부(추천자의 자격 : 학회원)
- 3) 사진(명함판) 1매
- 4) 이력서(소정양식) 1부
- 5) 요약문(소정양식) 1부
- 6) 연구계획서 1부
- 7) 연구실적(최근 3년간 연구실적)
- 8) 기타증빙서류

제5조 (심사위원회)

학술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임시소위원회(심사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)에서 선정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 단 1회를 심사한다.

제6조 (심사절차)

본 절차는 심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.

- 1) 심사위원 2/3이상 출석하여야 하며,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2) 선발과정에서 연구비 수혜자가 없거나, 당초 정해진 연구비 수혜자 수(3명)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학술연구비를 연구회 연구비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7조 (연구비 수혜자의 의무)

연구결과를 차기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하고, 이후 1년 내에 본 학회 학회지 “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” 에 게재하여야 한다. (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회의 응분의 조치를 받는다)

제8조 (연구비 수여 및 연구기간)

연구비는 추계학술대회 때에 수여하고, 연구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연구 중간보고 후 1년 연장이 가능하다.

제9조 (기타사항)

기타 본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

부 칙

- 1)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유효하다.
- 2) 본 규정은 2008년 7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.
- 3) 본 규정은 2012년 6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.
- 4) 본 규정은 2013년 5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.
- 5) 본 규정은 2016년 5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.
- 6) 본 규정은 2017년 9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.